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6

발의연월일: 2021. 1. 6.

발 의 자:이주환·성일종·임이자

김태흠・지성호・정동만

태영호 · 윤창현 · 황보승희

김정재 · 김용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범행 수법 역시 더욱 잔혹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5조의2).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을 "7년"으로 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 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 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진 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 전담 사법경

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아동 학대범죄사건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제4조(아동학대치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	<u>10년</u>
다.	<u>.</u>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때에는 <u>3년</u> 이상	<u>7년</u>
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생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
	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
	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 신
	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 제11조의2(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 지 못한다.
- 제15조의2(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 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조 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조 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 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 대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 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